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 소: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직인

